

【 금 현물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신·구조문대비표 】

현 행	개 정	비 고
<p>제2조(정의)</p> <p>6. “시가단일가매매”란 08:00부터 09:00까지 시가형성을 위해 단일가격으로 체결되는 개별경쟁매매방식을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</p> <p>6. “시가단일가매매”란 08:30부터 09:00까지 시가형성을 위해 단일가격으로 체결되는 개별경쟁매매방식을 말한다.</p>	<p>규정 개정 에 따른 시간 변경</p>
<p><신설></p>	<p>제19조(거래제한) ① 계좌가 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,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.</p>	<p>조항 신설</p>
<p>제 19조(분쟁조정) <이하 동일></p>	<p>제20조(분쟁조정) <이하 동일></p>	<p>조항 변경</p>
<p>제20조(관할법원) <이하 동일></p>	<p>제21조(관할법원) <이하 동일></p>	<p>조항 변경</p>
<p><신 설></p>	<p>부 칙 이 약관은 2019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.</p>	<p>부칙 추가</p>